

교원인사위원회규정

제정 1999.
 개정 2007. 3. 21
 개정 2008. 2. 28
 개정 2009. 2. 20
 개정 2012. 3. 1
 개정 2012.10. 1
 개정 2017. 5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대학이라 한다)의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인사위원회는 정관 제50조에 의거 총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중임할 수 있다.

③ 담당부서에서는 총장에게 인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시 직급별, 소속별, 남녀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추천한다.

제3조(위원장)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,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기능)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총장이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등의 전임교원과 겸임, 초빙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

2. (삭제) (2017.5.1. 개정)

3.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인사위원회는 전임교원의 승진임용 및 기간제, 계약제 임용 제청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가. 연구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활동

나.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
다. 교육 관계법령의 준수 및 교원으로서 품의 유지

5. (삭제) (2017.5.1. 개정)

6. 교원산학연구학기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

제5조(간사) 인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회의)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 인사위원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

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회의의 비밀유지)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참석등 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운영)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